

수원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84143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84143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16 선고 2019가단21116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란

담당변호사 임상헌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전

담당변호사 윤재식

변론종결 2021. 7. 8.

판결선고 2021. 8. 26.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16. 선고 2019가단21116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잡종지 273㎡ 지상에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각 약 18㎡ 면적의 컨테이너 2동과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의 각 점을 연결한 길이 약 32.63m의 철제 펜스, 같은 도면 표시 ⑥, ⑦, ⑧, ⑨의 각 점을 연결한 길이 약 13.2m의 철제 펜스, 같은 도면 표시 ⑤, ⑥의 각 점을 연결한 길이 약 1.9m의 철제 출입문을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34,864,287원 및 2019. 12. 18.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450,4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하현국, 판사 김선영, 판사 김유성

별지

도면



